

별표5

광주직할시 서구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지구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(안) 審査報告書

1992년 5월 일

1. 審査經過

- 가. 提案日字 및 提案者 : 1992年 2月 25日 西區廳長 提出
- 나. 回附日字 : 1992年 5月 11日 回附
- 다. 上程日字 : 第15回 西區議會 臨時會 第5次 都市建設 委員會 (1992年 5月 20日 上程議決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서구 건축과장 金 三 峰)

가. 提案理由

-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운영
-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도시기반 시설및 공동주택 건립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함

나. 主要 骨 子

- 회계관직 지정
 - 징수관, 경리관 — 도시국장
 - 분임징수관, 분임경리관, 채무관리관 — 건축과장
 - 지출원, 수입금 출납원 — 도시정비계장
- 세 입
 - 분양금 수입 · 재정부·용자 및 국민주택 기금 용자금
 - 타회계 보조금과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

○ 세 출

- 공동주택 건립비 및 부대복리 시설비
- 토지 및 건물보상비 및 이주비 (주거비, 주거대책비, 이사비)
- 기타 공동주택 건립 재경비

○ 지방채 발행

- 재원 부족시 내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
- 운영자금 부족시 일시 차입가능 (일반회계)

3.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的 要 旨

(專 門 委 員 : 李 元 昌)

(검토 의견)

- 본 조례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근거로 하여 자체 제정한 조례로
 - 도시의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로서
- 제6조 잉여금 처리에 있어
 - 제1호의 "지구별 재산제도로 한다"를 별도 조항으로 신설표기하고
 - 제2호에 "이 회계의 최종결산시 잉여금은 타지구 경영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다"로 하였는데 지구별 재산제를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지구별 최종결산으로 발생한 잉여금 처리사항 표기와
 - 본회계 시행기간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으로 매년도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 처리사항을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小委員會審查報告의 要旨

(審查報告者 : 李 昌 鎬 委員)

(主要要旨)

- 지방채 발행 — 의회 의결을 얻어 발행
- 지구별 채산제 — 지구별로 채산함을 원칙
- 잉여금 처리 정확 — 매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본회계의 세입에
이입하고 지구별 발생 잉여금은 본회계의 세입으로 함.

5. 修正案의 要旨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년 5월 20일 李 昌 鎬 의원外 3인

나. 수정이유 : 잉여금 처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

다. 수정 주요골자 : ○ 지방채 발행은 의회의결을 얻어 발행

○ 지구별 채산제 실시

○ 잉여금의 처리 — 결산상 잉여금은 본회계의 세입에

이입하고 지구별 발생 잉여금은 본회계의 세입으로 함.

6. 審查結果 : 修正可決

新 · 舊條文對比表

제 출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목:광주직할시 서구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지구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 설치조례(안)</p> <p>제1조【목적】 이 조례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(이하“ 법”이라 한다)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 서구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지 구 공동주택 특별회계(이하“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【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】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징수관 - 도시국장 2. 분임징수관 - 건축과장 3. 경리관 - 도시국장 4. 분임경리관 - 건축과장 5. 채무관리관 - 건축과장 6. 지출원 - 도시정비계장 7. 수입금출납원 - 도시정비계장 <p>제3조【세입】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 의 수입금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분양금 수입 2. 재정부·용자및 국민주택기금 용자금 3. 타회계 보조금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목:광주직할시 서구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지구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 설치조례(안)</p> <p>제1조【목적】 이 조례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(이하“ 법”이라 한다)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 서구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지 구 공동주택 특별회계(이하“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【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】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징수관 - 도시국장 2. 분임징수관 - 건축과장 3. 경리관 - 도시국장 4. 분임경리관 - 건축과장 5. 채무관리관 - 건축과장 6. 지출원 - 도시정비계장 7. 수입금출납원 - 도시정비계장 <p>제3조【세입】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 의 수입금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분양금 수입 2. 재정부·용자및 국민주택기금 용자금 3. 타회계 보조금

新 · 舊 條 文 對 比 表

제 출 안	수 정 안
<p>4.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</p> <p>제4조【세출】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동주택 건립비 2.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부대복리시설비 3. 토지 및 건물 보상금 4. 이주 대책비 5. 기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제경비 <p>제5조【지방채 발행등】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 회계는 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2.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 설)</p> <p>제6조【잉여금의 처리】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구별 재산제로 한다. 2. 이 회계의 최종결산시 잉여금은 타지구 경영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다. <p>제7조【준용】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</p>	<p>4.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</p> <p>제4조【세출】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동주택 건립비 2.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부대복리시설비 3. 토지 및 건물 보상금 4. 이주 대책비 5. 기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제경비 <p>제5조【지방채 발행등】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 회계는 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의회의 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2.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의회의 결을 얻어 일시 차입할 수 있다. <p>제6조【지구별 재산제】이 회계는 지구별로 재산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제7조【잉여금의 처리】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 회계의 매년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 본 회계의 세입에 이입한다. 2. 지구별 최종결산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본 회계의 세입으로 한다. <p>제8조【준용】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</p>
부 칙	부 칙

新 · 舊條文對比表

제 출 안	수 정 안
<p>【시행기간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</p> <p>【경과조치】 이 조례는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당해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.</p>	<p>【시행기간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</p> <p>【경과조치】 이 조례는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당해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.</p>